

서울고등법원 2023. 9. 20 선고 2023나2018407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,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명

담당변호사 성승용

피고, 항소인 B

변 론 종 결 2023. 8. 30.

판 결 선 고 2023. 9. 20.

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. 3. 31. 선고 2021가합560154 판결

주 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심판결 주문 제2항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.
가. 피고와 D 사이에 충북 단양군 O 답 4,264㎡에 관하여 2021. 1. 21.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.
나. 피고는 D에게 위 가.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단양등기소 2021. 1. 27. 접수 제63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주문 제3의 가. 나.항 기재와 같다.

(원고는 제1심에서 ① 충북 단양군 O 답 4,264㎡, ② P 도로 145㎡, ③ Q 대 473㎡, ④ R 대 557㎡, ⑤ S 임야 3,174㎡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였다가, 이 법원에 이르러 ①항 토지에 대하여만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것으로 그 청구를 감축하였다)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.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,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.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,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(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A, C에 대한 부분은 제외)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제1심판결 이유 중 “피고 B”을 “피고”로, “피고 A”를 “제1심 공동피고 A”로, “피고 C”를 “제1심 공동피고 C”로 모두 고친다.

제1심판결 제9면 제10행부터 제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.

『따라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와 D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충북 단양군 O 답 4,264㎡에 관하여 2021. 1. 21.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,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D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이 사건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』

2. 결론

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감축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. 제1심판결 중

피고에 대한 해당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.
다만 제1심판결 주문 제2항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 법원에서 한 원고의 청구감축에 따라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다.

재판장 판사 배용준, 판사 황승태, 판사 김유경